

『현대유럽철학연구』 제68집, pp.471~514.

(舊 한국하이데거학회/한국해석학회 통합 학회지)

DOI

성왕군주론의 현대적 ‘전유’ 그리고 주권권력*

이경배(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K 연구교수)

【한글요약】

주권권력은 폭력이라는 테제 아래 필자는 이미 존재하는 주권권력의 폭력성과 위험성 그리고 만들어진 권력의 이데올로기적 가면을 벗기기 위해 “II. 성왕군주의 환상: 만들어진 권력”에서 유교 이상과 현실 사이의 모순적 괴리에 주목할 것이며, “III. 이데올로기적 가상의 실재화: 현군(?) 박정희”에서는 우리가 경험한 국가 폭력이 어떤 이론적 가면을 쓰고 탄생했는지 그리고 여전히 가면을 바꿔 써가면서 어떻게 우리 주변을 떠돌아다니는지를 다룰 것이고, 그리고 “IV. “법학자들여, 어찌하여 그대들 소임 앞에서 입을 다물고 계시는가?”: 위험한 주권권력”에서는 총통을 헌법 수호자로 지칭하는 슈미트의 주권개념이나, 유신헌법의 이념적 토대를 제공한 헌법학자 한태연, 갈봉근이나, 9·11 이후 부시의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설치된 관타나모의 ‘예외상태’에 대해서 침묵하는 근대 국가법 이념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목적으로 슈미트와 아감벤의 주권론을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무기력하게 발가벗겨져 있는 인민의 가능한 도피처를 찾는다는 의미에서 맺음말에 대신하여 “무정부적 자유주의를 위한 단상”의 열개 정도를 그리고자 한다. 국가가 현존하는 한에서의 국가 그리고 “연속혁명”이 아닌 한 언젠가 탄생할 혁명 이후의 약속된 국가는 필연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6A3A01045347)

적으로 주권권력의 폭력 기제로 작동할 것이기 때문에, 무정부적 자유주의의 이상은 폭력의 절대적 공백상태를 상상한다.

【주제어】 성왕군주, 박정희, 주권권력(=폭력), 예외상태, 무정부적 자유주의

1. 머리말

주권권력은 근본적으로 폭력이다. 홉스가 상상한 주권권력은 자연상태에서의 근원적 폭력의 양도를 통해 탄생한 주권자의 절대적 폭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권권력은 폭력의 소멸이나, 폭력의 제거로서의 평화 상태의 유지가 아니라, 폭력의 집중, 더 나아가 폭력 강화에 의한 절대적 지배로 나타난다. 홉스에 따르면 자연상태의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상태', 다시 말해서 언제나 타인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늑대'로, 서로의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의 공포 아래 놓여 있는 전제적 개인이다. 이렇게 타인의 생살여탈권이라는 폭력적 공격 능력을 보유한 개인이 생명 위협의 공포를 인지한 후 자연적 폭력 권한을 한 명의 대표 주권자에게 양도하여 탄생한 주권권력의 상징기호가 대지의 괴물 '베혜뿔'에 대적한 해양 괴물 '리바이어던'이었다.¹⁾ 폭력의 양도로 탄생한 하나의 주권권력인 리바이어던은 '폭력의 폭력'으로서 초월적 폭력일 뿐만 아니라, 리바이어던이라는 신화적 상징소가 이미 지시하고 있는 것처럼 주권권력의 폭력적 야수성, 공포성의 의미망을 내포하고 있다. 모든 폭력을 자신에게 집중한 리바이어던은 - 홉스가 자신의 책 『리바이어던』의 표지 그림으로 형상화한 것처럼 - 자신의 영토를 벗어나 영토 밖에 거주하며, 리바이어던에게 주권을 양도함으로써 시민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거주지에 머무를 권한을 획득한 존재 또한 리바이어던에 포섭되

1) 성경, 욥기 40, 41.

어 영토 밖에 거주한다. 자연상태의 폭력 권한을 지닌 ‘무리’에서 벗어나 영주권을 획득한 시민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났기 때문에, 거주지는 공동화되어 오직 ‘규율과 감시의 규율 메카니즘’과 ‘생명관리의 안전 메카니즘’만이 남아있는 ‘권력 테크놀로지’의 도시로 그려진다.²⁾ 이처럼 리바이어던이란 상징기호를 갖는 주권권력은 통치영역인 자신의 영토를 벗어나 존재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통치영역에 경찰과 방역이란 정치적 폭력수단을 남겨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법 없는 법치’의 폭력 기제이다.

주권권력의 폭력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 다시 말해서 유교적 이상사회로 그려지는 “최선의 시대”³⁾는 “무위 정치(無爲之治)”⁴⁾의 통치원리가 지배하는 요순시대이다. “임금의 권력이 나와 무슨 상관이라!”⁵⁾고 소리높여 격양가를 부르는 무정부적 유토피아가 바로 정치가 중지된 시대, 주권권력의 통치행위가 더이상 폭력적 정치 수단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로 유교가 말하는 “대동세상”이다. 그러나 요순의 무위가 정치 행위의 소멸이거나 정치 권력의 절대적 공백 상태는 아니다. 오히려 요순의 무위는 “큰 도가 행하여진 세상”의 정치로서 백성을 교화하고 기르는 ‘목민(牧民)’의 통치행위가 이루어지는 “화순和順의 지극한 세상”⁶⁾을 위한 덕치이다. 이런 유교 정치의 이상적 주권자로 공자에 의해 상상된 요순은 ‘성왕’이라는 명칭을 얻었다. 성왕의 ‘聖’은 ‘큰 귀를 가지

2) G. 아감벤, 조형준 옮김, 『내전. 스타시스. 정치의 패러다임』, 새물결 2017, 57-91 참조

3) 김상준, 『맹자의 땀 성왕의 피. 중층근대와 동아시아 유교문명』, 아카넷 2016, 132. 김상준은 오비디우스가 그리스 신화 세계를 금, 은, 동, 철기의 시대로 구분하였듯이 요순시대를 “최선의 시대”, 우탕무의 시대를 “차선의 시대”로 구분한다.

4) 『논어』, 위정 1장.

5) 『서경』, 김학주 역주, 16 해제. 원시유교의 정치사상과 윤리사상의 전형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서경』의 역사적 형성에 대해서는 고대혁, 『『書經』 「虞書」의 내용체계와 유학사상적 의미』, 『동양고전연구』 제57집, 동양고전학회 2014, 141~145 참조.

6) 『예기』, 617, 654.

고 있어 말을 잘 듣는 자'로 타인의 말, 즉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⁷⁾ 지닌 “충명한 사람”⁸⁾을 가리키는 말이다. 신이 지배하던 시대에 그리스 정치가 델포이 신전 무녀의 귀를 통해서 신의 뜻을 알고자 하였던 것처럼, 하늘의 뜻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충명한 사람’만이 하늘의 뜻에 역행하지 않는 덕치를 행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춘 자이며, 이 사람이 “백성들의 부모”⁹⁾로서 천자가 될 자격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왕군주가 통치하는 ‘화순의 지극한 세상’에서조차 주권권력의 폭력이 존재했음을 공자가 기획한 역사서인 『서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묘족 정벌을 지시하거나, 곁·주를 방벌하기 이전 탕·무의 전투 전 훈시는 협박, 강권, 회유 그리고 포상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보면 요순의 이상 정치 시대조차 주권권력의 폭력이 완전히 제거된 대동세상이었기 보다는 “예의를 기강으로 내세워” 통치하는 예치의 시대로서 “소강세상”이었다고¹⁰⁾ 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선양 시대’와 ‘방벌 시대’로 구분되며, 방벌의 시대 이후 왕도는 선양이 아닌 양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양 시대의 덕치가 도통이라는 이름을 빌려 유교적 주권권력의 상징기호인 왕통의 이데올로기적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요순의 덕치는 유교의 정치적 이상사회 건설을 위한 설계도였거나 혹은 왕통의 계승자인 주권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도통의 계승자로서 유자 집단의 정치 수단이다.

성왕군주로 대표되는 유교적 주권자, 원시유교가 신화적으로 상상한 이상적 주권권력은 장막 뒤의 야수성을 감출 효과적 도구로서 이데올로기적 가면을 쓴 가상의 담론틀을 태생적으로 품고

7) 한자 聖에 대한 갑골문으로부터의 의미분석에 관하여, 정현근, 『성왕. 동양 리더십의 원형』, 민음사 2012, 27~33 참조

8) 『서경』, 주서, 255.

9) 『서경』, 주서, 255.

10) 『서경』, 예운, 619~620. 물론 소강세상의 통치자는 우, 탕, 문, 무, 성왕과 주공이 거론될 뿐, 요와 순은 거론되지 않는다.

있다. 혹은 이미 신체적 죽음을 경험한 생명에 주권권력의 상징 기호를 전승할 수단으로서 유교적 '성왕' 관념은 유교사회를 지배하는 정치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즉, 생명으로서 왕은 죽었으나 왕좌라는 권력 기호는 공백 없이 누군가를 찾아 양위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권권력의 야만적 폭력을 정치 이데올로기의 가면으로 가린 정치권력이 '현군(?)' 박정희라는 정치 언어이다.¹¹⁾ 박정희는 여전히 정치권력의 이데올로기적 유령으로 우리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 한국의 현대 정치사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라는 불법적 주권권력에 의한 폭력의 역사였으며, 이 과정을 지나 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적어도 전두환의 '정의 사회'와 노태우의 '보통 사람'이라는 정치적 수사는 사라졌지만, 그리고 이승만 국부론은 오직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국면에서만 정치 언어의 장에 등장했지만, 유독 박정희의 정치 언어는 반복 지속해서 재생되고 유통된다. 군인 박정희로부터 정치인 박정희로의 탈바꿈 과정부터 자연인 박정희로 생명이 멈출 때까지 박정희는 주권권력의 폭력 자체였다고 정의해야 한다. 박정희가 주도한 5·16 군사쿠데타는 "국가의 구제"라는 명목하에 "법이나 합법성을 빼앗고 중단시킨"¹²⁾ 주권권력의 전근대적 폭력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1972년 박정희 자신의 제안으로 통과된 유신헌법의 이념은 히틀러가 유대인을 법적 통치영역의 밖인 계토로 추방한 것처럼 특정 지역을 계토화하였으며, 동시에 정치적 반대 세력을 법의 영역으로부터 추방 격리하여 언제라도 생명을 박탈해도 무방한 '호모 사케르'로 만들었다. 이런 독재자들은 합법이 지배하는 생활세계를 초법적인 '예외상태'에 의해 식민지화하기 위해 가상의 '과잉 공포상태'를 인위적으로 조장하여, 법적 효력이 작동해야 할 합법적 공간을 '법이 없는 법'의 통치영역으로 만들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런 예외상태의 공간에서만 그들은 장막 뒤의 권력과

11) 정윤재, 『정치리더십과 한국민주주의』, 나남 2003, 281 이하 참조

12) M. 푸코, 『안전, 영토, 인구』, 심세광 옮김, 난장 2011, 357, 359.

무대 위의 권력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교의 이상 정치상인 성왕군주의 덕치가 백성의 교화에 있었다면, 푸코가 분석한 전근대적 권력 메카니즘은 사목 권력으로 대표되는 주권권력이며, 이 권력의 핵심 목적은 처음에는 어떤 국가에도 속하지 않은 '무리'의 생존이고, 생존을 약속한 땅으로의 '무리'의 인도였지만, 목적지에 이르러서는 '무리'를 국적을 가진 '인민'¹³⁾으로 변형시키는 것이었다. 모세의 출애굽기를 통해서 푸코는 거주지에 정착한 통치의 신 제우스에 비해서 히브리의 신을 “걸어 다니는 신, 이동하는 신, 방황하는 신”¹⁴⁾으로 표상한다. 그러나 유대민족의 해방자이자 인도자인 모세는 단순한 목자만이 아니라, 신이 자신에게 내린 명령에 복종하는 자이며, 신법을 지상에서 집행하는 대리자로서 주권자이다. 즉, “오직 한 사람의 수중에만 놓여 있어야” 하는 통치권의 점유자 모세는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그들을 권력으로 강요하고, 법을 제정하고 나중에는 법을 해석할 수”¹⁵⁾ 있는 무소불위의 주권 독재자가 된다. 이런 이유에서 결국 “모세는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노예 상태에 몰들어 온 백성들을 통치자에게 완전히 종속시키게 하기 위해 그들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겨 놓지 않았다.”¹⁶⁾ 그러므로 “국가 폭력의 점유 상태”를 부단히 유

13) 김윤희는 조선말 개항기의 조약체결 그리고 갑신정변 이후 근대적 의미의 정치적 인민개념이 우리 역사에 등장하였다는 사실을 신문자료와 고종실록, 승정원일기 등의 사료를 통해 증명했다. 김윤희, 「근대 국가구성원으로서의 인민 개념형성(1876-1894)-민(民)=적자(赤子)와 『서유견문(西遊見聞)』의 인민-」, 『역사문제연구』 제13집, 역사문제연구소 2009, 310 이하 참조 송호근은 근대적 인민의 역사적 형성을 “1860년부터 1894년(갑오개혁)까지의 기간은 형성단계”로, “1894년부터 1910년(한일합방)까지는 분화·동원 단계”로 주장한다. 송호근, 『인민의 탄생. 공론장의 구조 변동』, 민음사 2015, 32-94 참조. ‘민(民)의 다양한 용례에 관해서는 한승연, 「조선후기 國民再造와 民개념의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한국정치학회 2012, 52-55 참조

14) 송호근, 『인민의 탄생. 공론장의 구조 변동』, 민음사 2015, 184.

15) B. d. 스피노자, 『신학-정치론』, 강영계 옮김, 서광사 2017. 138.

지하는 주권자는 “신의 모사”이기 때문에, 주권자의 명령은 곧바로 ‘신법’이 된다. 이제 “왕에게 대립하는 자는 신에게 죄를 짓는”¹⁷⁾ 것이 된다. 이렇게 지상의 주권자는 신격화됨으로써 신의 권능을 지상에 구현하는 폭력적 명령권의 소유자가 되고, 초월적 신법은 지상의 주권자에게서 인격화됨으로써 실정법적 권위를 획득한다.

군립하는 주권자가 초월자와의 존재론적인 본질동등성을 얻듯이, 슈미트(C. Schmitt)에 따르면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권력은 주권자와 “인민의 필연적 동질성(Homogenität)”을 국가 보존의 전제로 삼는다. 이에 반해서 의회민주주의 국가는 계급들의 근원적 대립 위에 국가 운영과 보존의 원리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계급들 사이의 실재적 모순”을 해소하기보다는 국가가 존재하는 동안 끊임없이 동반한다.¹⁸⁾ 이처럼 슈미트의 민주주의는 계급들의 투쟁상태도 계급적 요구들의 절차적이며 합법적인 조정상태도 아닌 동질성의 원리 위에서 수행되는 주권자의 정치적인 결단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국가 폭력을 점유하고 있는 주권자는 슈미트의 표현에 따르면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자”¹⁹⁾이다. 마치 외과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살리 위해 긴급수술을 결정하고, 수술대 위에서 환자의 생명 활동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주권자는 국가의 생명 보존을 위해 법과 합법성을 중단할 결단을 내린다. 이런 의미에서 신국의 통치는 종말을 약속하지만, 국가의 통치는 “마지막 날”인 역사의 종말을 부정하는 무한 통치의 시간을 약속한다. 주권권력의 폭력 장치인 국가의 종말, 정치의 시간이 끝나는 순간은 헤겔의 이상처럼 시민사회의

16) B. d. 스페노자, 『신학-정치론』, 139.

17) J. Bodin, *Über den Staat*, Stuttgart: Reclam 1976, S. 19와 39.

18) H.-G. Flickinger, *Die Autonomie des Politischen. Carl Schmitts Kampf um einen beschädigten Begriff*, hrsg. v. Ders., Weinheim: Acta Humaniora 1990, S. 3-4.

19) C. 슈미트, 『정치 신학. 주권론에 관한 네 개의 장』, 김항 옮김, 그린비 2010, 16.

국가로의 부정적 지양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국가의 시민사회로의 흡수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국가의 제거가 국가 폭력의 소멸이라고 할 때, 국가 지양행위로서 모반, 반란, 내전 혹은 온갖 불복종의 권리행사는 주권권력을 근원에서 해체하는 “혁명적 종말론”, 다시 말해서 “시민사회가 국가보다 우위에 있다고 긍정하는 종말론”의 지위를²⁰⁾ 획득한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주권자의 효과적 폭력사용 교본이라면, 로크의 『통치론』은 주권권력의 원칙적 해체 가능성으로서 ‘인민 저항권’을 보장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로크는 인민이 주권권력의 잔혹한 폭력 앞에 노출되었을 때, 주권자에게 대항하거나, 현재 주권권력을 해체하고 자연상태를 거쳐 재구성하거나 혹은 주권권력으로부터의 도피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공자는 “천하에 도가 있으면 벼슬하고, 도가 없으면 은거한다”²¹⁾고 하여 권력으로부터 도피를 정당화하였으며, 맹자는 이에 더하여 “임금에게 큰 허물이 있으면 간언하고, 여러 번 간언해도 듣지 않으면 임금 을”²²⁾ 바꾼다고 하여 주권권력의 해체를 적법화한다. 인민의 도피와 저항이 보장되어야 하는 근본 이유는 바로 “인간이 성취한 모든 정치조직은 범죄에 기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카인의 아벨 살해, 로물루스의 레무스 살해라는 폭력이 역사의 “시작”이기 때문이다.²³⁾ 이런 맥락에서 필자는 우선 형성된 주권권력의 폭력성과 위험성 그리고 구성된 권력의 이데올로기적 가면을 벗기기 위해 “II. 성왕군주의 환상: 만들어진 권력”에서 유교 이상과 현실 사이의 모순적 괴리에 주목할 것이며, “III. 이데올로기적 가상의 실재화: 현군(?) 박정희”에서는 우리가 경험한 국가 폭력의 이론적 가면을 다루고자 하며 그리고 “IV. “법학자들이여, 어찌하여 그대들 소임 앞에서 입을 다물고 계시는가?”²⁴⁾: 위험한 주권

20) M. 푸코, 『안전, 영토, 인구』, 481~482.

21) 『논어』, 태백.

22) 『맹자』, 만장 상.

23) H. 아렌트, 『혁명론』, 홍원표 옮김, 한길사 2004, 84.

권력”에서는 총통을 헌법 수호자로 지칭하는 슈미트의 주권개념이나, 유신헌법의 법적 토대를 제공한 헌법학자 한태연, 갈봉근이나, 중국의 신장 위구르 수용소를 향해서는 인권을 외쳐대지만 정작 9·11 이후 부시의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설치된 관타나모의 ‘예외상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근대 국가법 이념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목적으로 슈미트와 아감벤의 주권론을 다루고자 한다.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주권권력의 폭력 앞에 무기력하게 발가벗겨져 있는 인민의 가능한 도피처를 찾는다는 의미에서 맺음말에 대신하여 “무정부적 자유주의를 위한 단상”의 열개 정도를 그리고자 한다. 국가가 현존하는 한에서의 국가 그리고 “연속혁명”이 아닌 한 언젠가 탄생할 혁명 이후의 약속된 국가는 필연적으로 주권권력의 폭력 기제로 작동할 것이기 때문에, 무정부적 자유주의의 이상은 폭력의 절대적 공백상태를 상상한다.

2. 성왕군주의 환상: 만들어진 권력

유교 정치사상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성왕은 ‘내성외왕’을 가리키는 말로 국가 폭력을 독점한 주권권력으로서 ‘왕’이 아니라, 왕이기 이전에 “자기를 닦아서 공경스럽게” 하고, “자기를 닦아서 남을 편안하게” 하며, “자기를 닦아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²⁵⁾ ‘성인’이어야만 한다. 그 때문에 정치가 “인류의 교도에 힘쓰는” 일인 한, 정치는 “원래가 성인의 사업이어야”²⁶⁾ 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성인의 정치는 곧 성왕의 도, 윤리와 정치 사이에 있는 간극 제거라고 할 수 있다.²⁷⁾ 그러므로 주권권력의 폭력적

24) G. 아감벤, 『예외상태』, 김항 옮김, 새물결 2019, 표제어.

25) 『논어』, 헌문.

26) 『예기』, 예운.

27) 장현근, 「도덕군주론 : 고대 유가의 聖王論」, 『한국정치학회보』 제38집, 한국정치학회 2004, 49~66 참조

잔혹성만을 보여준 걸·주는 주권 폭력을 점유하였지만, 성인의 도에 이르지 못했기에 폭군이라 일컬어지고, 천명을 얻었다고 하는 탕·무에 의해 방벌되었다. 또한 공자는 성인의 도를 얻어 윤리적 척도가 되었지만, 주권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정치행위도 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유교가 꿈꾸는 성왕의 덕치는 공자와 같은 성인이 주권권력을 획득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정치이다. 그러나 현실은 공자는 정치 권력이 없고, 하·은의 양위 권력은 결국 폭군을 양산하였으므로 주권자는 “어질고 능력 있는 이는 차례를 기다릴 것 없이 등용”²⁸⁾하여 현능한 신하로 하여금 통치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소위 ‘최소’ 정치력을 발휘하기를 유자 집단은 희망했다. 왜냐하면 신민은 “왕을 선택할 권리가 없”²⁹⁾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교의 “요청(Postulat)”인 ‘성·왕’은 왕의 주권권력에 대한 부정이라기 보다는 왕에게 ‘성인의 도’를 깨닫기를 바라는 도덕적 요구이다. 그 때문에 아무런 폭력 수단을 가지지 못한 무기력한 유자는 “자신의 피를 뿌려 성왕의 피를”³⁰⁾ 은폐해야만 했다. 결국 ‘성왕군주’라는 이데올로기적 정치 수사는 “왕을 우러러보고 살아가는 억만 민중들에게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더욱 신성한 것으로 만드는 작용”³¹⁾을 하였으며, 주권권력의 잔혹한 폭력성을 도덕의 미사여구로 은닉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래서 “제자백가의 성왕론은 훗날의 역사에서 군주 전체를 약화시키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강화하는 작용을 했을지도 모른다.”³²⁾

주나라의 통치력이 허약해지고 범질서가 붕괴되어 가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품은 공자가 주나라의 정치질서와 도덕질서를 회복하려는 기획으로 상상한 이상 정치가 성왕의 덕치다. 따라서 공자

28) 『순자』, 213.

29) J. Bodin, 앞의 책, S. 23. 보댕의 원어로는 “인민” 이 더 적당한 말이다.

30) 김상준, 『맹자의 땀 성왕의 피. 중추근대와 동아시아 유교문명』, 167.

31) 장현근, 『성왕론』, 312.

32) 장현근, 『성왕론』, 312.

가 상상한 개인적으로는 도덕적 인격의 완성자이며 사회적으로는 공동체의 운용원리를 통달한 현자가 “백성에게 널리 은혜를 베풀고 못사람들을 구제할”³³⁾ 성인의 정치를 펼칠 성왕이다. 이런 현자의 전범이 공자에는 요임금이다. 순·우와도 구별하여 요임금을 가리켜 공자는 “높고 크도다! 오직 하늘만이 크거늘, 오직 요임금만이 그것을 본받으셨으니, 넓고 아득하여 백성들이 뭐라고 이름할 수 없구나”라고 찬양한다. 공자의 눈에 요임금의 순임금으로의 선양은 요임금의 아들로부터의 찬탈이 아니며, 우임금의 권력 또한 찬탈이 아니라 선양이었으며, 우임금의 효성과 검소함이 순임금이 지닌 성인의 인격을 가졌기 때문이다.³⁴⁾ 즉, 성왕의 덕치는 자기 수양의 완성을 전제하는 성인의 정치이기 때문에, 성인의 숙명적 과업은 우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愛民) 백성을 위한 일(爲民)³⁵⁾, 다시 말해서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고, 백성을 구제하는 일’이다. 이런 이유로 “성왕의 활동 터전”은 백성의 마음으로, 성왕은 이 “터전을 갈며 [...] 터전에 씨를 뿌리고, [...] 김매며, [...] 모아 거두어 들”³⁶⁾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일(安民)을 첫 번째 과업으로 삼는다. 도덕적 인격의 완성자인 성인의 언행이 곧 성왕의 정치라면, 성왕의 정치적 행위 목적은 백성을 기르는 일(良民)이며, 이와 더불어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가르치는 일(教民)이다. 이처럼 애민, 위민, 안민, 양민, 교민으로 표현되는 유교적 민본정치 이념은 군주와 백성의 관계를 부모와 어린 자식(赤子)사이의 가부장적 가족관계로 치환 가능하게 만든다. 즉, 군주는 백성의 아버지라고 쉽게 상상하게 만든다.³⁷⁾ 어

33) 『논어』, 용야.

34) 『논어』, 태백.

35) 『논어』, 학이.

36) 『예기』, 예운.

37) 이노우에 아쓰시, 「이퇴계와 유교적 민본주의」, 『퇴계학논집』 제8집, 영남퇴계학연구원 2011, 207~238 참조. 특히 이노우에는 일본 에도시대 유교에 비해 조선의 민본주의로부터 함의를 토대로 한 유교적 민주주의의 맹아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233 이하 참조. 이희주, 「유교의 정치사회에 있어서 통치자의 자질」, 『

진 군주의 덕업은 무지하고 미숙한 어린 백성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길러 편안하게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군주는 기르고, 가르치며, 사랑하는 주체이고, 백성은 길러지고, 가르침을 당하며, 사랑받는 객체일 뿐이다. 이렇게 유교 민본정치 이념의 뿌리에 자리하고 있는 가부장 정신은 군주를 자신의 범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 치외법권적 권역에 머무르게 하는 이데올로기적 방편이 되었다. 유교 군주의 공적 정치 행위인 민본정치로서 애민, 위민, 안민, 양민, 교민은 백성을 향한 것이지, 군주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며, 백성에게 내려지는 명령이지, 군주 자신에게 내려지는 명령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군주는 “자신이 선포한 법에도 복종하지”³⁸⁾ 않는다.

공자가 유교 이상 정치의 표본으로 요·순·우임금을 제시한 이유는 주나라의 종법제도가 무너져 가기 시작한 춘추시대의 사회 정치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우임금 이후 하·은의 폭군 걸·주 방벌과 탕·문·무왕의 정치 권력을 정당화하는 맹자의 사상적 작업에는 전국시대의 사회정치적 요구가 투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요임금의 정치 치적으로부터 윤리적 인격, 정치적 수행능력, 통치원리에 대한 통찰력을 두루 갖춘 주나라의 현명한 군주로서 문·무왕까지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서경』의 저술목적 자체가 유교적 이상 국가의 원형을 요·순·우임금 삼대에서 찾아 제시함으로써 주나라 정치권력의 역사적 정통성과 권력 승계의 정당성을 증명하려는 것이었다고 봐야 한다.³⁹⁾ 이때 성인의 정치를 목적으로 하는 유교 정치이념이 변론해야 할 사태는 요·순·우 삼대에 거친 선양이 아니라, 하나라를 폐망시키고 은나라를 건국한 방벌군주 탕왕, 은나라를 붕괴시키고 주나라를 건국한 방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제6집,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7, 111~131 참조
38) J. Bodin, S. 25.

39) 이 점에서 “나는 주나라를 따르겠다” 고 공식 천명한 공자의 정치적 입장이 그의 추종자에 의해 『서경』에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논어』, 팔일.

별군주 무왕이다. 한마디로 신하된 자로 임금을 시해하고, 권력을 찬탈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맹자는 비교적 명료한 대답을 한다. “인(仁)을 해치는 자를 적(賊)이라 하고 의(義)를 해치는 자를 잔(殘)이라 합니다. 잔적인 사람을 일부(一夫)라 합니다. 일부인 주를 살해했다고 들었지 임금을 시해했다고는 듣지 못했습니다.”⁴⁰⁾ 군주이면서 도덕적 행위의 일탈자이거나 사회정치적 법도의 범법자인 사람은 폭군이라고 불리며, 폭군 방벌은 정당하다고 맹자는 주장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군주라고 하더라도 도덕 법칙과 공동체의 법을 어기는 자는 단순한 범죄자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폭군 정치 아래 고통받는 백성이 “어찌 우리를 뒤로 미루는가?”라고 원망하고, “우리 임금님을 기다리고”⁴¹⁾ 있기 때문에, 탕·무의 폭군 방벌은 쿠데타가 아니라, 범죄에 대한 단죄이며, 백성을 억압으로부터 해방하는 애민과 위민의 민본정치 행위라고 맹자는 강조한다. 물론 자고 일어나면 군주가 바뀌고, 해가 지나면 나라의 운명이 위협받는 전쟁 시대에 맹자의 군주에 대한 정치적 호소, 즉 “백성이 가장 귀중하고 사직은 그다음이며, 군주는 대단치 않다”는 언술은 ‘인민우선주의’라고 정의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군 방벌론에 내재해 있는 성왕-폭군의 극적 대립구조는⁴²⁾ 여전히 한편의 선, 문명, 진리, 아름다움 등의 긍정, 다른 한편의 악, 야만, 거짓, 추함 등의 부정이라는 이분법적 구분 위에 구축된 지배와 통제의 규율사회를 위한 맹자의 상상이다.

따라서 “선왕의 법도를 따르고서도 잘못을 저지르는 자는 아직 없었다”⁴³⁾는 맹자의 단언은 곧바로 “지금 세상의 유가들은

40) 『맹자』, 양혜왕 하.

41) 『맹자』, 등문공 하.

42) 장현근, 「성인의 재탄생과 성왕 대 폭군 구조의 형성」, 『정치사상연구』 제17집, 한국정치사상학회 2011, 104~125 참조. 이아영, 송재혁, 「성왕(聖王)과 패자(霸者) 사이: 월왕 구천(句踐)에 대한 『국어』와 『사기』의 평가」, 『한국정치학회보』 제53, 한국정치학회 2019, 77-99 참조.

43) 『맹자』, 이루 상.

[...] 요즘의 다스리는 방법을 말하지 않고 [...] 모두 아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것을 말하고 선왕이 이룬 공적만을 말한다”⁴⁴⁾는 한비자의 비판에 직면한다. 상벌의 엄격성을 수단으로 국가를 통치하기를 희망한 한비자에게 군주가 지나치게 인자하여 처벌을 두려워하거나, 지나치게 잔인하여 처벌이 과도한 것은 법치의 붕괴로 공동체를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에, 유교 성왕정치는 덕치가 아니라, 오히려 정치 중단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한비자는 “요임금은 군주가 되어 그의 신하를 군주로 대했고, 순임금은 남의 신하가 되어 그의 군주를 신하로 대했고, 탕왕과 무왕은 남의 신하가 되어 그의 군주를 시해하고 그 시신에 벌을”⁴⁵⁾ 가했으니, 요·순은 군신의 질서를 무너뜨렸으며, 탕·무는 신하로서 군주를 죽인 역적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한비자의 관점에서 요·순·우임금의 정치와 선양을 칭송하는 공자는 주나라의 종법체계를 어지럽히고, 신하로서 군주의 지위에 오르는 모반과 역심을 그의 의도와는 별개로 정당화하였으며, 천명을 이유로 탕·무의 방벌을 찬미하는 맹자는 신하가 언제라도 군주로부터 왕위를 찬탈해도 된다고 하여 역모의 합법성을 마련하여주는 원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맹자 자신이 한탄한 것처럼⁴⁶⁾, “은나라와 주나라가 700여년이 되었고, 우虞나라와 하夏나라도 2000여 년이나 되었다. [...] 지금 바로 3000년 전으로 [올라가] 요와 순의 도를 살펴보려고 하지만 아마도 반드시 그것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참조하거나 대조할 근거도 없어 그것을 반드시 판정하는 것을 어리석으며, 확정하여 할 수도 없으면서 그것을 근거로 삼는 것은 속이는 것이다.”⁴⁷⁾ 요·순과 같은 성인의 정치가 언젠가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지금에 와서 그 정치의 면모를 증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순의 정치를 현재에 불러오는 일은 현재의

44) 한비자, 『한비자』, 김원중 옮김, 휴머니스트 2016, 905.

45) 한비자, 『한비자』, 912.

46) 『맹자』, 진심 하.

47) 『한비자』, 895.

정치를 허구의 신화에 맡기려는 속임수이며, 또한 현재의 정치를 '무위(無爲)'에 빠지게 하여 '무정(無政)'하게 만드는⁴⁸⁾ 정치 허무주의로의 길이다.

덕이 있고, 어질며 현명한 사람이 정치하기를 유교는 희망했지만, 성인은 정치를 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니지 않았고, 덕이 없고, 어질지도 않으며, 현명하지도 않은 걸·주는 권력을 점유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역사적 현실이다. 이 때문에 정치 허무주의를 넘어 현실정치로 나아가기 위해 유교가 찾은 해법은 우선 성인 정치의 이상과 성왕의 현실적 부재에 대한 인정이었으며, 이를 토대로 주권권력의 점유자인 군주를 향한 성인 정치의 이상을 계승한 공자의 후예들인 유자 집단의 끝없는 '성인되기' 요청이었다. 왕통과 도통의 불일치가 정치 현실이었기 때문에, 도통의 계승자는 자신의 생물학적 피를 담보로 군주의 피 묻은 손을 씻어내려 했지만, 주권권력의 폭력행사가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군주 권력은 언제나 자신이 아닌 타인의 피를 요구한다. 다시 말해서 성인이 왕위를 계승할 수 없는 한, 현실정치는 양위 받은 군주와 어진 신하가 함께하는 정치행위이어야만 한다. 그러나 현실은 군주와 신하 사이의 근본적 비대칭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를 벤야민의 "폭력론"에 기대어 말한다면, 유교 군주의 폭력이 "법 정립적이라면", 유교 신하의 폭력은 "법 제거적이며, 전자가 한계를 정한다면, 후자는 한계없이 제거하고, [...] 전자가 위협한다면, 후자는 설득하며, 전자가 잔혹하다면, 후자는 잔혹하지 않은 방식으로 치명적이다." "전자는 희생을 요구하며, 후자는 희생을 가정한다."⁴⁹⁾ 군주의 주권권력은 법 정립적 폭력이며, 타인의 피를 요구하는 데 반해, 유자 집단의 폭력은 합당하지 않은

48) 최익한, 송찬섭 엮음, 『실학과와 정다산』, 서해문집 2011, 348.

49) W. Benjamin, "Zur Kritik der Gewalt", in: *Walter Benjamin Gesammelte Schriften* Bd. II.1, hrsg. v. Rolf Tiedemann u. Hermann Schweppenhäuser, Frankfurt a. M.: Suhrkamp 1991, S. 199-200. 원문에는 유교 군주의 폭력 대신에 "신화적 폭력" 이, 유교 신하의 폭력 대신에 "신적 폭력" 이 자리한다.

법적 명령에 대해 간언하고 저항하며, 군주를 위한 ‘장엄’하다못해 ‘숭고’하기조차한 자기희생을 준비한다. 군주의 주권권력은 왕위를 위한 잔혹한 폭력인 데 반하여, ‘왕위 없는 왕’인 유자 집단은 폭력 수단을 지니지 않았기 때문에, 잔혹할 순 없지만, 군주를 성왕 정치이념의 그물에 가둠으로써 결국 주권권력이 점유한 폭력의 배후 주인이 된다.

3. 이데올로기적 가상의 실재화: 현군(?)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에 접어들면서 애민, 위민, 교민의 유교 민본주의 정치이념은 자기 수양의 정점에 선 도덕적 인격의 완성자로서 ‘성인의 정치’가 아니라, “앞을 밝히며 동시에 百姓을 引導”하며, “안타까운 心情을 抑制하면서라도 뒤떨어진 百姓을 따듯한 손길로 이끌어 올려 주는 참을성 있는 雅量과 同時에 斷行하는 實踐力을 具備”⁵⁰⁾한 가부장적 ‘아버이’ 권력을 정당화하는 정치 이데올로기의 수단으로 왜곡 변형되어 ‘민주주의’ 보다 우선하는 공동체 운용원리로 자리 잡는다.⁵¹⁾ 박종홍의 자애롭고 현명한 유교 군주에 대한 표상에 응답하기라도 하듯이 박정희는 1962년 출판한 『우리民族의 나갈길 - 社會再建의 理念-』에서⁵²⁾ 스스로 민족의 “多難한 歷程”을 성찰하고, 민족 “更生의 길”을 찾는 ‘애민과 위민의

50) 박종홍, 「지도자론」, 『박종홍 전집』 VI, 형설 1980, 221~222. 박종홍이 이 글을 쓴 시점이 5·16 쿠데타가 발생한 그다음 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51) 함규진, 「한국적 민주주의의 형성과 민본주의의 역할」, 『정치정보연구』 제19집, 한국정치정보학회 2016, 275~300, 김성실, 「한국적 민주주의의 사상적 토대와 특성, 전망에 관한 일고찰. 유교정치사상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제36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7, 9~41 참조.

52) 박정희는 필요할 때마다 자기 변론의 차원에서 총 5권의 저서를 집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저서 이외의 연설문 분석연구, 전인권, 「박정희의 민주주의관. 연설문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11집, 서울대한국정치연구소 2002, 139~155 참조.

성군'이어야 한다는 자기도취에 빠져, 민족 구제의 과업을 수행할 '혁명' 주체가 자신뿐이라는 주문을 자기에게 걸 뿐만 아니라, 구습에 오염되어 있는 국민들에게 “人間革命”을⁵³⁾ 주문하는 국민 교사이기를 자처한다. 그리고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직후 박종홍은 “四·一九 革命과 軍事革命은 틀림 없이 舊政權의 腐敗에 대한 反抗이다. 百姓의 自由를 守護하기 위하여 일어났다”고 하며 박정희를 “우리의 指導者로서의 創意的인 力量”⁵⁴⁾이라고 걸·주의 무도한 폭정을 중지시킨 당·무의 방벌과 같이 해방 후 한국 정치에 만연한 부패와의 단절을 약속하는 혁명으로 정의한다. 박종홍의 이와 같은 주장에 조응하여 박정희는 군사쿠데타의 필연적 타당성을 해방 후 17년에 거친 “두 政權의 腐敗, 不正”이 빚어낸 “貧困의 惡循環”을 끊고 “韓國化된 福祉民主主義”⁵⁵⁾ 국가 건설에서 찾는다. 여기서 더 나아가 박정희는 “民族史上的 惡遺産”을 “李朝黨爭史”라고 밝히면서, “政黨政治의 非正常的인 壓力”, “政治의 組織的인 腐敗와 不正”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정당 간의 정책논쟁을 중심으로 운용 보존되는 의회민주주의의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하고, “行政的 民主主義”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박정희의 소영웅주의와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적대감은 그의 사상적 스승이며, 지지자이자 동반자였던 박종홍으로부터 유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박종홍의 정치 논리는 또한 다카하시 도루의 조선 유학에 대한 이해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언어자본 점유의 근본적 불평등이 지배하는 언어자본 시장에서 주권권력의 독점은 곧바로 “정당한 상징권력의 독점”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박정희와 박종홍, 독재자와 철학자의 비정상적 만남은 권력독점을 위한 상징권력의 끊임없는 재생산 약속이었던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독점적 지위를 획득한 “상징권력은 말화에 의해 소여를 구성하는 권력이자, 세계상을, 그리하여 세계에 대한 행위

53) 박정희, 『우리民族의 나갈길 - 社會再建의 理念-』, 동아출판사 1962, 1.

54) 박종홍, 「자유의 의의」, 『박종홍 전집』 III, 형설 1980, 557.

55) 박정희, 『우리民族의 나갈길 - 社會再建의 理念-』, 1, 3.

를, 결국 세계를, 보게 하고, 믿게 하며, 공고히 하고, 변형하는 권력”⁵⁶⁾이기 때문이다.

주권권력의 잔혹한 폭력성을 장막 뒤에 효과적으로 은폐하는 무대 위 상징권력의 언어는 권력의 독점적 지위를 점유한 박정희 자신과 그의 이데올로그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과 영역에서 확대 재생산되었다. 박정희와 그의 대리인들이 양산하는 그들만을 위한 정치 언어는 극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존재하는 적의 위협을 거대하게 과장하고, 상징기호 점유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적을 만들어내 언어자본 시장의 피착취자들에게 인위적 과잉공포를 조장한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보편을 특수화하며, 자신들을 특권화한다.⁵⁷⁾ 이런 맥락에서 박정희와 그의 대리인들은 보편적 민주주의가 아닌, 형용사로 제한된 특수 민주주의, 즉 ‘행정’ 민주주의, ‘민족적’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라는⁵⁸⁾ 특수한 정치 언어를 생산하고, 소비·유통한다. 왜 박정희와 그의 대리인들은 민주주의를 특수화하고자 했는가? 한마디로 그들만의 권력독점을 정당화할 이데올로기적 수단을 마련하고, 그들 자신을 특권화하여 그들에 의한 권력점유의 합법적 토대를 갖추기 위해서다. 방벌 이후 자신의 권력욕으로 인해 성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탕왕보다도 “修己治人 혹은 嚴己愛人”의 유교 가치를 철저히 실천하여 “청교도적 결백성과 근검의식이 몸에 뻐고, 스스로에 대한 엄격성과 겸허한 인격의 소유자”⁵⁹⁾였던 박정희는 사적 권력욕에 취해 ‘5·16’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고⁶⁰⁾

56) P. 부르디외, 『언어와 상징권력』, 김현경 옮김, 나남 2020, 194, 196.

57) 김용호, 「박정희의 민주주의관」, 『한국논단』, 한국논단 1991, 110~116 참조

58) 박정희의 ‘행정적’, ‘민족적’, ‘한국’ 민주주의 담론변화 분석, 강정인, 「박정희 대통령의 민주주의 담론 분석: “행정적” · “민족적” · “한국적”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철학논집』 제27집, 서강대철학연구소 2011, 287~321 참조

59) 정윤재,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리더십에 대한 유교적 이해」, 『유교리더십과 한국정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엮음, 백산서당 2002, 219.

60) 장관식, 「박정희·전두환·노태우의 리더십 분석」, 『정치논총』 제27집, 건국대

그의 대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박정희가 쿠데타 이후 곧바로 “祖國이 다시금 腐敗, 不正에 물든 舊政治人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願치 않”는다고 하거나, “國政을 감당할 指導勢力의 交替”를 주장하고, “革命이라는 手術만으로 患者가 元氣를 回復하는 것이 아니며 [...] 병이 되오지 않도록 恒久的인 方略과 基礎工事を 해 놓아야 한다”⁶¹⁾고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박정희가 말하는 “民政復舊”를 권력 이양으로 이해할 순진한 시민은 없었을 것이다. 박정희와 그 대리인들은 거의 주술에 가까울 정도로 자주 이전 민주당 정권의 지도력 부재와 무능, 그리고 부정, 부패를 지적함으로써 쿠데타의 정치적 이유를 찾고자 했으며,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의 미성숙과 후진성을 지적한다. 그래서 박정희는 서구 민주주의와 구분하여 한국식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이렇게 설명한다. “대개 後進地域에서 民主主義가 성공하려면 「直輸入」에 그치지 않고 그 地域의 良心的이오 革新的인 엘리트(選良)들에 의한 指導力이 필요한 것이다. 西歐의 古典的 民主主義가 韓國과 같은 東洋的 專制主義의 歷史的 傳統을 지닌 社會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의 妄想에 불과한 것이다. 民主主義的 自由를 마치 「指導者의 不要」로 오인하는 것은 도는 팽이에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⁶²⁾

학교 1992, 165~178. 특히 장관식은 전두환은 “무모한 저돌형”이라고 하여, 무식한 자로 표현하지만, 박정희는 “공격성과 지혜를 겸비한 이지적 공격형” 인물로 “권력의 공익성”을 강조하였다고 한다. 다른 맥락이지만 박정희의 일상생활에서의 유교문화 흔적을 “小人閑居 爲不善”이나 “盡忠輔國 滅私奉公”이란 철서를 쓴 사실에서 발견하는 연구자도 있다. 정운재, 앞의 논문, 198 참조. 주한국대면대표부 비서인 유순달은 박정희가 남북평화, 근대화, 고도의 경제성장을 주도적으로 이룩하였으므로, 박정희의 애국애족 정신을 존경해야 한다고 강요한다. 유순달, 「한국적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한국논단』 제146집, 한국논단 2001, 62~71 참조. 박정희 개인에 대한 미화와 찬양은 몇 년 전 대구의 한 지지체장이 박정희를 “半人半神”이라 지칭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어쩌면 흡스가 주권권력을 ‘리바이어던’으로 상징화한 사실을 미루어 생각하면, 박정희를 “半人半獸”라고 명명하는 것이 더 어울릴지도 모른다.

61) 박정희, 『우리民族의 나갈길 - 社會再建의 理念-』, 1~4.

박정희와 그의 이데올로그들은 끝없이 경제적 빈곤에 따른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의 부족과 “日帝植民地 奴隸根性”⁶³⁾을 비난하면서, “國民 스스로가 舊惡에서 脫皮하고 無知에서 解放되고 스스로의 運命을 正當히 決定할 수 있는 政治能力이 向上”⁶⁴⁾된 이후에,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함으로써, 한국식 민주주의 실시 원인을 국민의 미숙과 무식에서 찾는다.⁶⁵⁾ 혹은 그들은 정치인들의 무능과 불안정한 선거행태, 정쟁으로 인한 정책 집행의 비효율성,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와 같이⁶⁶⁾ “분립된 권력끼리 서로 경쟁하는 데만 정력을 소모”⁶⁷⁾하는 원인을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권력 체계의 한계에서 찾으면서,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행정 민주주의, 개인적 권리보다 민족 혹은 국민 전체를 우선하는 민족적 민주주의, 한국의 실정과 시대적 요구에 맞춘 한국 민주주의의 필요성을⁶⁸⁾ 강조한다. 이렇게 국민에게 민주주의 실천역량이 결여되어 있고, 정당 중심의 의회 민주주의를 실행하기에는 정치인 개인과 정당의 이기적 행태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준비와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획책하는 김일성 정권”에 대적하여 ‘평화적’ 민족통일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하기 때문에⁶⁹⁾, 행정력 낭비를 막고 능률을 높일

62) 박정희, 『우리民族의 나갈길 - 社會再建의 理念-』, 211.

63) 박정희, 『우리民族의 나갈길 - 社會再建의 理念-』, 2. 자신의 출세를 위해 민주군관학교에 혈서를 보내고 일본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여 일제의 장교로 해방을 맞이한 박정희의 역사의식과 파렴치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64) 박정희, 『우리民族의 나갈길 - 社會再建의 理念-』, 230.

65) 한기식, 「한국민주주의론 서설 - 토착적 민주주의 · 개념 · 형성을 위한 하나의 시론 -」, 『한국정치학보』, 한국정치학회 1971, 5-40 참조 특히 그는 서구 민주주의는 시민의 개성과 자기의식을 기반으로 “독립심과 고도의 자조정신 집단적 문제해결능력”을 전제로 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한다.

66) 『한국민주주의 각급학교교육지침』, 문교부, 1972, 85-87 참조

67) 이상익, 『유가사회철학연구』, 심산 2002, 312.

68) 미발간 저서이지만 박정희는 『한국민주주의』라는 저서를 저술하여 초고 형태로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저서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최광승, 조원빈, 「박정희의 민주주의관과 유신체제 정당화」, 『한국동북아논총』 제26집, 한국동북아학회 2021, 45-67.

수 있도록 권력이 집중된 한국식 민주주의만이 우리에게 가능한 민주주의 정치형태라고 역설한다. 형용사적 제약이 없는 민주주의를 한국에 실시하기 위한 전제가 앞서 문제들의 해결이라면, 거꾸로 이 문제들이 정치적으로 잔존하는 한, 한국은 특수 민주주의 정치체계의 통치와 지배 아래 운영되어야 한다는 말이 된다. 더 나아가 이들은 한국 국민의 미숙, 무지, 노예근성, 부패가 민주주의를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지적하면서도, 역설적으로 한국 민족사에서 민주주의의 태생성과 토착성을 찾는 아이러니한 행태를 보인다.⁷⁰⁾ 이들에 따르면 신라 화백제도의 만장일치와 고구려 대대로 제도와 같은 민주적 유산을 원시공동체에서부터 이미 경험했기⁷¹⁾ 때문에, “서구의 민주주의가 전래되기 전에도 이 땅의 백성은 보다 깊은 인생관 자체에 있어서 민주사상을 가지고 있었다.”⁷²⁾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의 미성숙과 무지, 야당 정치의 비능률과 낭비를 비난하면서 강력한 중앙집권적 주권권력의 필요를 역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원시시대로부터 민주주의 의식이 고양되어온 민족이라는 주장은 상호 모순된다. 권력의 언어에서 발생하는 이런 자기모순은 근대적 개인 주체를 “국민 전체”⁷³⁾ 혹은 민족이라고 간주하는 민족주의 및 국가중심주의 태도에 이미 내재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모순은 개인 실존의 존재가가 소멸하고 민족과 국가로의 총화단결의 의무만을 남겨두거나, 국민개조를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이중 태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국가형 국가 주도 경제성장을 표명하면서도⁷⁴⁾

69) 박종홍, 「통일과 민족사적 정통성」, 『윤리연구』 제1집, 한국국민윤리학회 1973, 248-260 참조 특히 249-251.

70) 김운태 외, 『한국민주주의 - 그 발전과 토착화 -』, 동서출판사 1973, 152-155 참조

71) 『한국민주주의 각급학교교육지침』, 80-83.

72) 박종홍, 『박종홍 전집』 VI, 125.

73) 박종홍, 「통일과 민족사적 정통성」, 『박종홍 전집』 VI, 147.

74) 박정희가 ‘경제개발’에 천착한 이유를 가난을 극복하고자 한 박정희 개인의

경제와 정치를 별개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선경제 후민주의 이율배반적 표어, 남북분단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의 과업을 완수하겠다는 주권권력의 맹세와는 달리 냉전 대립의 시대를 종결하고 평화공존의 시대로 전환하는 국제정세를 안보 위기로 간주하여 인위적 과잉공포를 조장하는 만들어진 유신체계의 등장과 더불어 정점에 도달한다. 인위적 위기의식으로서 대외환경변화, 국정운영의 비능률, 군력분립의 비효율성이라는 진단을 내린 이후 박정희와 그의 대리인들이 찾은 조치는 '주권자인 대통령의 의지와 국민 전체의 의지는 언제나 동일하다'는 총화성의 원칙 위에 한 정점으로의 국가 권력의 융화 집중이다. 이런 의미에서 "指導者의 자리가 固定함은 그만한 利로운 점이 있음은 勿論이다"⁷⁵⁾라고 박정희의 장기집권 보장을 호소하거나, "우리들은 서로 헐고 뜯어 깎아 내리기에 앞서 指導者로 하여금 그의 力量을 千分 發揮할 수 있도록 서로의 힘을 다하여 協力하여야"⁷⁶⁾ 한다고 주문하며 '總和團結'의 "維新的 과업"⁷⁷⁾을 달성하라고 독촉한다. 경제발전, 국가보위, 남북통일의 유신과업을 업고 박정희는 단순한 지도자에서 '영도자'로 변경된 임명장을 받아들였다. 상징권력의 언어기호는 주술적 마력을 가지고 있어서 '영도자' 칭호를 받은 주권자는 자신의 실존적 가치에 대한 확신에 차서 '저주와도 같이' 국민 전체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여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탈주술화'의 근대를 다시 '주술화'의 전근대로 되돌려놓는다.⁷⁸⁾ 즉, 임명장을 받은 주

환경요인에서 찾고, 이를 토대로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박정희 개인의 의지라고 주장하는 연구자도 있다. 정윤재, 「제 3,4공화국의 성격과 리더십 - 박정희대통령의 근대화리더십에 관한 연구-」, 『동북아연구』 제1집,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1995, 139~172 참조

75) 정윤재, 「제 3,4공화국의 성격과 리더십 - 박정희대통령의 근대화리더십에 관한 연구-」, 224.

76) 정윤재, 「제 3,4공화국의 성격과 리더십 - 박정희대통령의 근대화리더십에 관한 연구-」, 232.

77) 정윤재, 「제 3,4공화국의 성격과 리더십 - 박정희대통령의 근대화리더십에 관한 연구-」, 155.

78) H.-G.. Flickinger, "Mythos der Souveränität und Soveränität des

권자가 “대문자로 시작하는 ‘존재’에 접근함에 따라, 나머지 계급은 불가피하게 무(無) 속으로 혹은 최소한의 존재”⁷⁹⁾로 몰락한다. 이렇게 ‘영도자’ 박정희는 전쟁, 가난, 빈곤으로 인해 “민주적 성격형의 특징”을 갖추지 못한 국민을 “민주적 성격형”으로 스스로 “창달(暢達)”할 수 있도록 “선도(善導)”하고 “협조(協調)”하는 “책임정치(責任政治)”를⁸⁰⁾ 구현하는 ‘교민(敎民)의 성군’으로 자신을 특징한다. 또한 유신 과업으로서 ‘영도자와 하나됨’이라고 할 국민 총화를 달성하기 위해 박정희의 이데올로그들은 “國籍있는 교육”⁸¹⁾ 실시를 준비하기 위해 조상의 얼과 민족정신을 담은 ‘국민교육헌장’을 반포하고, ‘유신’에 대한 역사적 고증을⁸²⁾ 내놓아 박정희 유신헌법의 학문적 근거를 제시한다.

박정희는 1972년 ‘10월 유신’을 단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법질서 위의 합법적 국가 운영이라는 ‘정상적’ 국가통치행위를 중단하고, ‘한국’만의 민주주의라는 유신헌법 체제로 진입하여 스스로 ‘비정상적’ 국가통치로 접어든다. 그러나 군인 박정희로부터 정치인 박정희로의 변화과정을 고찰해보면, 5·16 쿠데타 이후의 소위 “혁명정부”가 “국가재건회의”라는 초헌법 기관을 구성하고,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하여 헌법 효력을 정지 혹은 폐제하는 비정상적 조치를 이미 단행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⁸³⁾,

Mythos”, in: *Die Autonomie des Politischen. Carl Schmitts Kampf um einen beschädigten Begriff*, hrsg. v. Hans-Georg Flickinger, Weinheim: Acta Humaniora 1990, S. 70~72.

79) P. 부르디외, 『언어와 상징권력』, 170.

80) 『한국민주주의 각급학교교육지침』, 88.

81) 박종홍, 「통일과 민족사적 정통성」, 『박종홍 전집』 VI, 154.

82) 박종홍, 「새 역사의 창조 - 유신시대의 기조철학-」, 『박종홍 전집』 III, 형설 1980, 677~678, 이선근, 『한민족의 국난극복사』, 미문 1978, 794~808. 철학자와 역사학자인 이들은 ‘유신’의 본래 어원은 일본의 ‘명치유신’이 아니라, 신라 지증왕 4년 국호 ‘德業日新 綱羅四方’, 고려 인종 5년의 維新之教, 중종과 고종대의 ‘咸興維新’에서 유래했으며, 특히 고종대의 ‘함흥유신’은 “바로 日本의 明治元年(1868)보다 앞서기 5년 또는 4년 전의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유신체제는 어쩌면 5·16 쿠데타의 연장일 뿐이며, 단지 변경된 내용은 대통령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종신집권’의 길을 열었고, 권한 제한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주권권력의 무제한적 폭력행사를 가능하게 한 “비상조치법”을 제정한 사실뿐이다. 박정희의 유신헌법 제정의 조력자들인 김기춘, 한태연, 갈봉근⁸⁴⁾은 ‘10월유신’의 목적을 “민족의 생존권 보위”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 달성”이라고 표명하며, 이 유신 과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5·16 군사쿠데타 당시 구성한 ‘국가재건회의’와 유사한 권력기관으로서 “통일주체국민회의”, 즉 “집행권에 대한 국회의 영향을 배제”하고, “정당적 요소를 배제”한 대통령 선출권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을 설치했다.⁸⁵⁾ 주권자인 인민의 직접선거라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무효화하고, 대리선거라고 해야만 할 ‘간접선거제도’를 채택함으로써 “한국적 파시즘의 가장 완성된 형태”⁸⁶⁾를 달성했다.

이미 언급했듯이 유신헌법의 핵심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의 헌법적 근거 마련이다. 긴급조치권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83)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이 단행한 여러 가지 헌법 제한조치와 내용에 대한 헌법적 설명은 한태연, 『국가재건 비상조치법』, 법문사 1961, 40 이하 참조 특히 한태연은 국군을 “국가 최후의 수호자”라 간주함으로써 군사쿠데타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84) 한태연은 2002년 대담회에서 유신헌법 제정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고, 오직 자구 수정의 역할만 담당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검사 김기춘, 헌법학자 갈봉근, 김도창과 함께 유신헌법 제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담회에서 한태연은 박정희 죽음의 배후에 미국의 존재를 언급하기도 해 박정희의 죽음에 특별한 의미를 실으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도 보인다. 이상록, 「‘예외상태 상례화’로서의 유신헌법과 한국적 민주주의 담론」, 『역사문제연구』 제20집, 역사문제연구소 2016, 511-555 참조 특히 한태연의 대담문은 522-523, 525-526 참조

85) 갈봉근, 『유신헌법해설』, 한국헌법학회출판부 1975, 서문과 19.

86) 김세균, 「한국적 민주주의」, 『역사비평』 제47집, 역사비평사 1999, 290-298 참조, 인용은 290.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⁸⁷⁾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다. 일단 긴급조치권이 발동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며,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군정 또는 군사재판과 같은 예외적 운용”이 가능하다.⁸⁸⁾ 그리고 긴급조치권이 발동되는 기간에는 국회는 “입법권은 물론 이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보댕이 “왕은 자신이 선포한 법에도 복종하지 않는다”고 정의한 것처럼 예외상태에서 대통령은 “일체의 사법적 수사의 대상에서 제외”⁸⁹⁾된다. 유신헌법의 긴급조치권은 긴급조치권 발동요건을 “위협을 받거나 우려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여 대통령의 주관적 인격에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국회 및 국가기관의 기능 정지 등 초헌법적 권능을 부여함으로써, 헌법 체제를 인격화하였으며, 주권자 개인을 초헌법적 존재로 인정하여 신격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박정희의 개인적 권력욕이 유신체제의 근본 원인이겠지만, 그의 이데올로그들 또한 유신체제를 합법화하고, 그들만이 독점한 상징기호를 생산 유통 소비함으로써 장막 뒤의 잔혹한 주권권력을 무대 위의 장엄하고, 숭고한 “극중극”⁹⁰⁾의 권력으로 변형시킨다. 따라서 그들의 언어에서 박정희는 “儒敎의 賢君”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잘 먹고 잘살게 하여 禮儀廉恥를 알게 만들기 위한 恒産優先의 정치를 성공”시켰으며, “四海困窮의 문제를 해결해 백성들의 생활을 운택하게 하고 국가재정을 풍부하게 만든 데 성공”⁹¹⁾ 해 유교적 “성인의 정치”를 실시한 성왕군주로 명명된다.⁹²⁾ 박정희의 군사쿠테타는 당시의 “사회여론 및 분위기와”⁹³⁾ 일치하여

87) 갈봉근, 『유신헌법해설』, 40 재인용. 강조는 필자.

88) 갈봉근, 『유신헌법해설』, 42.

89) 갈봉근, 『유신헌법해설』, 43.

90) C. 슈미트, 『햄릿이나 헤쿠바냐. 극 속으로 침투한 시대』, 김민혜 옮김, 문학동네, 2021, 49.

91) 정윤재,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리더십에 대한 유교적 이해」, 226.

92) 앞서 인용한 『논어』, 용야 참조.

환영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양적·유교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감동과 존경을 불러일으킨 賢君”이었고, “현군으로서 그를 따르고 지지한 대다수 臣民들과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유지한 지도자”였기 때문에⁹⁴⁾ 요순임금 이외에 방별로 왕의 지위에 올라 공자와 맹자에게 성왕으로 불린 탕왕보다 오히려 어진 성인으로 추앙받는다. 이렇게 박정희는 그의 이데올로그들의 언어에 의해서 주권권력의 초헌법적 주체로서 초월성을 인격화한 법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국가 정신의 정치적 영도자로서 유교적 성왕의 현재적 구현체로 신격화된다. 그러나 인위적 과잉공포와 함께 ‘강력한 지도자’로 우리 역사에 등장한 박정희는 유교적 성왕 이데올로그의 현재적 ‘전용’의 나쁜 사례일 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을 게토화하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정치인을 수용소에 격리한 덕치와는 거리가 먼 ‘반유교적’ 파시즘의 시조일 뿐이다.⁹⁵⁾

4. “법학자들이, 어찌하여 그대들 소임 앞에서 입을 다물고 계시는가?": 위험한 주권권력

스피노자는 “인간들은 오직 공포가 지속하는 동안에만 미신에 빠져 허우적 거린다”⁹⁶⁾고 했다. 인민의 “두려운 마음의 광기”⁹⁷⁾를 이용하여 “1930년대 독일의 세속적 권력이 신민들에게 요구했던 행동”과 같이 박정희와 그의 대리인들은 “최고 존엄과 최대의 자유를 주권자의 영광에 대한 찬양 속에”⁹⁸⁾ 존재하도록 조장했

93) 정윤재,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리더십에 대한 유교적 이해」, 212.

94) 정윤재,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리더십에 대한 유교적 이해」, 235.

95) 이승환, 「‘아시아적 가치’ 논쟁과 유교문화의 미래」, 『퇴계학』 제11집, 퇴계학연구소 2000, 197~226 참조, 그리고 이승환, 「반유교적 자본주의에서 유교적 자본주의로」,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 동아시아문화포럼 1999, 61~82 참조.

96) 스피노자, 『신학-정치론』, 18.

97) 스피노자, 『신학-정치론』, 18.

다. 이렇게 박정희는 존재 자체로 찬양받아 마땅한 신과 같이 초헌법적 주권자라는 사실만으로도 ‘교민’의 유교적 계몽군주라는 “영광의 상징”⁹⁹⁾이 되었다. ‘영도자’ 박정희는 초헌법적 통치기관으로 “최종 심급의 심판자”이며, “헌법 수호자”이고 그리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국가와 새로운 질서를 정초할 권리와 힘”¹⁰⁰⁾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초월적 세속권력, 즉 법적 인격체 자체다. 주권권력의 폭력으로 다른 “모든 폭력을 억압하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두려워하는 가혹한 처벌에 대한 공포를 통해서 사람들을 제재”하는 주권자는 “어떤 법에도 구속받지 않기 때문에” 법률상 모든 것이 허용된 무소불위의 권력이며, 이런 이유로 “어떤 불법행위도 신민에게 행해질 수 없”¹⁰¹⁾ 무오류의 권력이다. 주권자의 행위 자체는 “법 없는 권력”¹⁰²⁾으로 법적 한계 밖의 권력이며, 자신의 이름으로 법적 권한을 무한히 행사하는 권력으로 인민에게 죽음을 요구하는 권력이다. 인민의 생명권을 결정하는 신적 권한을 부여받은 지상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주권자는 바로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현대의 주권권력이 선포하는 예외상태는 “정치적 반대자뿐 아니라 어떠한 이유에서건 정치 체제에 통합시킬 수 없는 모든 범주의 시민들을 육체적으로 말살시킬 수 있는 (합)법적 내전상태”¹⁰³⁾를 의미한다. 이처럼 주권자의 주권권력은 합법성의 이면에 잔혹성과 야수성을 은닉한 ‘리바이어던’의 폭력이기 때문에, 이 흉포한 괴물을 제거하거나 혹은 우리에게

98) G. 아감벤, 『왕국과 영광. 오이코노미아와 통치의 신학적 계보학을 향하여』, 박진우·정문영 옮김, 새물결 2017, 444.

99) G. 아감벤, 『왕국과 영광. 오이코노미아와 통치의 신학적 계보학을 향하여』, 500.

100) C. Schmitt, “Der Führer schützt das Recht (1934)”, in: *Positionen und Begriffe im Kampf mit Weimar-Genf-Versailles 1923-1939*, Hamburg: Hanseatische Verlagsanstalt 1940, S. 200.

101) 스피노자, 『신학-정치론』, 342, 343, 347.

102) C. 슈미트, 『독재론. 근대 주권사상의 기원에서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까지』, 김효전 옮김, 법원사 1996, 163.

103) G. 아감벤, 『예외상태』, 15.

가두어 길들여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의 정치학, 철학, 법학의 대리인들, 히틀러의 슈미트는 그들의 소임을 다하지 않고, 눈을 감고 외면하거나 침묵했으며, 더 나아가 합법화하며 부추겼다.

박정희가 ‘국가보위’와 ‘사회안녕’을 주장하며 헌법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슈미트는 1차대전 막바지인 1917년에 발생한 킬(Kiel) 수병들의 반란을 제어하지 못한 체제의 허약성과 패전 이후 새롭게 구성된 바이마르 체제의 자유주의적 중립주의의 허구성을 고발하며, “그런 붕괴의 모욕에 대한 모든 윤리적 분개”가 ‘독재’를 불러왔다고 주장한다. 바이마르 체제에서 “카톨릭 정신은 >>설 자리를 잃었으며<< 그리고 >>탈전체주의화<< 되었고, 인문주의적 프로이센 정신은 >>탈헤겔주의화<< 되었으며, [...] 독일 정신은 >>탈프로이센화<< 되었다.”¹⁰⁴⁾ 비당파적 중립주의 원칙 위에 구성된 바이마르 공화국의 자유주의적 헌법 체제는 결과적으로 정치 사회적 혼란만을 가중시켜 1933년 제3제국 체제가 들어서기 전까지 수없이 많은 비상계엄을 선포해야만 했다고 슈미트는 자신의 시대를 진단한다. 슈미트는 바이마르 체제의 혼란 원인을 자유주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적 혼란을 종식할 헌법학적 수단을 대통령의 ‘독재권’ 강화에서 찾는다. 이런 이유에서 슈미트는 “국가가 패망해서는 안 된다”는 인민의 위기의식에 기대 “법을 침묵케 하는”¹⁰⁵⁾ 독재관의 역사를 로마 시대로부터 탐구한다. 그에 따르면 로마 시대 독재관은 원로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특수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군사독재’와 내전 상태의 종식을 목적으로 하는 ‘치안독재’로 구분되었다. 이렇게 특수한 정치적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독재관이 임명되었기 때문에, ‘위임 독재’라 불리며, 임기 또한 제한되어 있었다. 물론 독재관은 자신에게 부여된 과업을 달성하는 동안 황

104) R. Mehring, *Carl Schmitt. zur Einführung*, Hamburg: Junius 2000, 36.

105) J. J. 루소, 『사회계약론』, 이환 옮김,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160.

제와 동일한 ‘생살여탈권’을 가졌지만, 과업 수행 이후에는 독재관의 권한은 자동 소멸된다. 만약 독재관의 권한 수행 기간이 길어지거나,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면, 독재는 필연적으로 “폭정”이 될 것이며, 혹은 국가가 패망한다면, 독재는 “무용”할¹⁰⁶⁾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슈미트는 “입법자는 국가 밖에서 있지만 법 속에 있으며, 독재자는 법 밖에서 있지만 국가 속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독재자적 입법자, 헌법을 제정하는”¹⁰⁷⁾ 주권 독재가 바이마르 체제의 정치 사회적 아노미 상태를 해소할 방안이라고 본다. 국가 이전의 입법행위는 권력이 없는 공허한 형식일 뿐이며, 실정법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 권력 행사는 형식을 결여한 단순 폭력일 뿐이다. 따라서 입법과 권력 행사의 모순을 해소할 ‘입법 독재’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주권자의 정치적 행위가 근본적으로 “적과 동지의 구별”이라고 할 때, 군사독재와 치안독재를 실행할 수 있는 주권자는 ‘전쟁’과 ‘내전’을 빌미로 인민에게 ‘적’이 될 것인지 혹은 ‘동지’가 될 것인지를 선택을 강요한다. 그리고 주권자는 이렇게 선포한다. “도덕적으로 선한 자만이 자유이며 자신을 국민이라고 부르며, 국민과 동화하는 자격을 가진다. 덕을 가지는 자, 동지만이 “정치문제의 결정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다 [...] 정적은 도덕적으로 부패해 있으며, 무해하게 만들어야 하는 노예이다. [...] 만약 다수가 타락해 버린 것이 판명되면, 그 때에 덕을 가진 소수파는 「덕」의 승리를 원조해야 할 모든 폭력 수단을 사용해도 상관없다.”¹⁰⁸⁾ 그러니까 슈미트의 시각에서 정치는 ‘선량한 인민’인 동지와 ‘부패한 인민’인 적 사이에 벌어지는 “가장 강도 높고 극단적인 대립”, 전쟁이나 내란과 같은 “무장투쟁”의 공간이다.¹⁰⁹⁾ 그러므로 주권자

106) J. J. 루소, 『사회계약론』, 162.

107) C. 슈미트, 『독재론』, 163.

108) C. 슈미트, 『독재론』, 156. 강조는 필자.

109) C. 슈미트, 『정치적인 것의 개념』, 김효전·정태호 옮김, 살림 2016, 43, 45. 강조는 필자.

의 정치행위는 적을 섬멸하여 “적과 동지의 구별이 없는 세계”¹¹⁰⁾에서만 멈춘다. 그러나 ‘적과 동지’를 구별하고, ‘선량한’ 동지가 되라고 강요할 초월적 권리를 가진 주권자의 “주권 행위의 합법성, 신학적 표상 세계에서 법질서 구축적 행위의 합법성은 각각의 합리적 토대를 박탈당한다. 행위는 선사유불가능한 근거로부터의 행위이다.”¹¹¹⁾ 앞서 언급했듯이 주권권력의 입법독재는 언제나 실제적 국가체제에 우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선사유불가능한’ 주권자의 순수의지에 의존한다. 다시 말해서 주권자의 의지는 셸링의 표현처럼 신의 “어둠의 의지(dunkler Wille)”이다.

국가보존을 목적으로 주권자는 헌법의 기본권과 현행질서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권력이다. 헌법체제를 정지 혹은 폐제하는 ‘법 없는 권력’의 정치행위는 주관적 “결정 그 자체”¹¹²⁾이다. 헌법체제의 효력을 무력화했기 때문에, 법적 권한 밖에서 이루어지는 주권자의 정치적 결단의 초월적 가능 조건은 신의 절대성에 의존하는 교회와 교황의 무오류성과 동일한 주권자의 전능성이다. 즉, 주권자는 언제나 선하다는 전제다. 오직 주권자의 ‘좋은’ 결단, ‘선한’ 의지의 발현으로 예외상태가 발동 유지되기 때문에, 예외상태는 순수 법적 의미에서는 “텅 빈 상태”, “법의 공백 상태”¹¹³⁾이면서, 또한 리바이던의 원초적 폭력상태이다. 그러므로 예외상태는 합법적이며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하거나, 설명을 요구하는 시공간이 아니라, 오직 주권자의 권력의지만이 작동하는 초자연적 장소라고 해야 한다.¹¹⁴⁾ 이런 이유로 “법학에

110) C. 슈미트, 『정치적인 것의 개념』, 48.

111) H.-G. Flickinger, S. 76. 78.

112) C. 슈미트, 『정치신학』, 17.

113) G. 아감벤, 『예외상태』, 21. 윤재왕, 「예외상태와 주권의 역설 - 아감벤의 칼 슈미트 해석에 대한 비판」, 『강원법학』, 제47권, 강원대비교법학연구소 2016, 337~404 참조

114) 슈미트에게서 신학정치개념의 세속화에 대해서 윤진재, 「칼 슈미트의 정치신학과 세속화, 그리고 그 비판: 정치신학 비판을 통한 민주주의 위기 분석」, 『사회과학연구』 제57집, 강원대사회과학연구원 2018, 295~320 참조

서 예외상태는 신학에서의 기적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¹¹⁵⁾고 슈미트는 말할 수 있었다. 기적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자연적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일”, “자신이 해명할 수 없는 일”로서 기적은 “신의 존재의 가장 분명한 증명”이듯이¹¹⁶⁾, 예외상태 또한 “한편으로 규범이 효력을 갖지만 적용되지 않고(‘힘’을 갖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 법률적 가치를 갖지 않는 결의가 법률의 ‘힘’을 획득하는 하나의 ‘법률상태’”, 즉 “법률 없는 법률-의-힘”¹¹⁷⁾이라는 법학적 논리를 일탈한 모순 자체이다. 따라서 예외상태는 신이 인간 이성을 초월한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를 표출하듯이 주권자의 권력의지가 관철되는 일종의 “섭리패러다임”¹¹⁸⁾이 지배하는 상태다.

총통 히틀러가 1933년 2월 28일 ‘국가와 민족 보호에 관한 긴급 조치’를 공포한 이후 나치독일이 패망할 때까지 제3제국이 예외상태에 놓여있었던 것처럼, 박정희 또한 주권자의 주관적 권력의지만이 존재하는 ‘법률 없는’ ‘법치’국가를 1974년 이후 총 9차례의 ‘긴급조치’를 공포함으로써 유지하였으며, 이런 예외상태로서 유신체제는 - 사실 전국이 ‘아우슈비츠’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사망 이후에도 존속하다가 1980년 10월 27일 전두환 정권에서 헌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박정희의 긴급조치 1호는 유신체제를 비판 혹은 비난하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수사할 수 있었으며,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해, 여기에서 심판 처단한다는 포고¹¹⁹⁾였다. 이 포고 이후 긴급조치 4호 위반을 이유로 ‘인민혁명당’사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사건’, ‘남민전 사건’ 등과 그 외 간첩단 조작사건으로 국민을 불법

115) C. 슈미트, 『정치신학』, 54.

116) 스페노자, 『신학정치』, 149, 153.

117) G. 아감벤, 『예외상태』, 79-80.

118) G. 아감벤, 『왕국과 영광』, 292.

119)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헌법학적 설명은 한태연, 앞의 책, 40-45 참조

기소 구금하고 사형을 선고함으로써, 주권권력의 통치영역 전체를 인간이 비인간이 되는 '수용소'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선과 악 앞에 있는 무책임과 ‘판결불능’의” 비정상 국가에서 인민은 ‘최선의’ 인간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생존 인민으로서의 수치심을 강요당했으며, 상환 불가능한 부채를 떠안아야 했다. 이렇게 “억압당하는 자들의 전통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가르쳐 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예외상태>가 일상 규칙(Regel)이라는 사실 말이다.”¹²⁰⁾ 왜냐하면 긴급조치는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민에게서 인민의 자격을 박탈하고, 더 이상 인민일 수 없는 한계장소에 격리하거나, 누구나 죽일 수 있는 ‘호모 사케르’로 인민의 공동체에서 추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과 연관된 가족을 공동체의 이름으로 낙인찍고, 소외시켰으며, 법적 권리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외상태를 살아야 하는 인간에게 비정상이 일상의 ‘도덕률’이 된다.

중단된 유신과업 완수라는 박정희 유헌정치를 ‘성실’하게 수행한 검사 김기춘이나 유신헌법 제정에 깊이 관여한 헌법학자 한태연에게서 우리는 아이히만의 ‘사유 불능’, ‘언어 불능’, ‘판단 불능’을 발견한다. 아이히만의 양심이 히틀러의 명령에 대한 성실한 수행이었던 것처럼, 이들은 유신헌법의 “골격을 손댈 수 없다니까 하라는 대로 할 수 밖에 없었”¹²¹⁾다고 진술한다. 유신체제 유지라는 명목으로 자행된 많은 공안사건의 지휘자였던 김기춘의 반성 없는 ‘몰염치’나, “그 후에 욕은 관여한 우리가 더 먹”었다고¹²²⁾ 하는 한태연의 하소연이나, “유대인을 죽이는 일에 나는

120) W. Benjamin, “Über den Begriff der Geschichte”, in: *Walter Benjamin Abhandlungen*

Gesammelte Schriften, Bd. I·2, Frankfurt a. M.: Suhrkamp 1991, These VIII, S. 697. 한상원, 「예외상태의 정치적 존재론: 슈미트와 벤야민의 예외상태론 논쟁 고찰」, 『시대와 철학』, 제27집,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6, 115-149 참조

121) 이상록, 「‘예외상태 상례화’로서의 유신헌법과 한국적 민주주의 담론」, 522, 한태연 대담 재인용. 강조는 필자.

122) 이상록, 「‘예외상태 상례화’로서의 유신헌법과 한국적 민주주의 담론」, 522.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나는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을 결코 죽인 적이 없다. [...] 나는 어떠한 인간도 죽인 적이 없다”고¹²³⁾ 하는 아이히만의 변명이나 역사적 사태에 대한 사유의 부재, 언어의 부재, 판단의 부재이기는 마찬가지다. 어쩌면 이들 모두는 죄가 없다. 왜냐하면 박정희 혹은 히틀러의 명령을 충실히 따랐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또한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 혹은 박정희의 유신체제에 대한 확신에 차 있었던 인물들이며, 이 신념을 버린 적이 없는 자들이다.¹²⁴⁾ 그러므로 이들은 사유 능력과 판단 능력이 부재한 ‘성실한 악’이라 불려야 한다.

5. 맺음말: 무정부적 자유주의를 위한 단상

권력 획득과 보존을 목적으로 “집승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는 주권권력은 언제나 “악행을 저지를 수 있”¹²⁵⁾는 잔혹성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헌법 77조는 여전히 대통령에게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정지할 수 있는 ‘초법적’ 권한으로서 “비상계엄 선포권”을 용인하고 있다. 근대 국가론의 토대를 만든 계약론자들은 국가가 자연 상태의 ‘인민 주권자들’ 상호 간의 계약을 통해 탄생했다고 하지만, 단적으로 우리 중 누구도 국가를 계약한 적은 없다. 그러므로 “인민은 권한 없이 그들에게 무엇이든 강요하는 자들에게 저항할 충분한 자유”¹²⁶⁾, 더 나아가 “비인간적인 행동을 거부할 절대적인 권리”¹²⁷⁾를 갖는다. 시민 불복종의 권한으로서

123) H. 아렌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 김선욱 옮김, 한길사 2013, 74.

124) 이상록, 「‘예외상태 상례화’로서의 유신헌법과 한국적 민주주의의 담론」, 526 참조 한태연은 대답에서 유신체제의 역사적 가치와 필연성을 역설했다.

125) N. 마키아벨리, 『군주론』, 강정인·김경희 옮김, 까치 2012, 118, 121.

126) J. 로크, 『통치론: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및 그 목적에 관한 시론』, 강정인·문지영 옮김, 까치 2018, 203.

무제약적인 저항권을 모든 인민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심지어 선거로 선출된 정권마저도 ‘인민의 이름으로’ 말하는 인민집회에 의해서, 민주주의적 통치의 조건 아래 합법적 권력을 궁극적으로 쥐고 있는 바로 그 ‘우리’를 실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전복되거나 중단될 수”¹²⁷⁾ 있다. 주권자 개인의 권력의지가 “입법부가 선언한, 사회의 의지인 법률을 자신의 자의적인 의지로 대체”¹²⁹⁾하여 공동체를 ‘수용소’로 만들고, 인민을 과잉공포의 아노미 상태에 빠뜨릴 때, 인민의 선택 가능성은 저항권을 발동하여, 주권 권력을 제거하고 새로이 구성하거나, “폭정으로부터 벗어날 권리”¹³⁰⁾를 발동하여 피난처를 찾는 것이다. 그러나 폭정으로부터 도피한 난민은 주권권력 밖의 존재로서 국가법적 권리를 박탈당한 상태에 있는 원초적 폭력이기 때문에, 다른 주권권력의 권역 아래서 생존을 용인받거나 혹은 주권권력의 영토 밖으로 배제되어 근원적 자연상태로 되돌려지게 된다. 이 때문에 주권권력의 은총에 기대어 ‘조에(zoe)’를 얻는 인민이 아닌, “누가 인민이며, 누가 인민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지, 논쟁을 통해”¹³¹⁾ “자기 지시적, 자기 구성적인 발화행위”¹³²⁾를 하는 ‘자유로운 인민들의 무정부’가 요구된다.

주권자는 인민의 생살여탈권을 쥔 초법적 권력이기 때문에, 통치의 역사가 시작하면서 인민은 주권자의 “현명함”을 기원했다. 하지만 주권자는 기껏해야 신의 권능을 빌린 “지상에서 신의 대리인”이었거나, 호모 에코노미쿠스 시대에는 ‘보이지 않는 손’의 의지를 알지 못하는 무능하고 무지한 개인이었을 뿐이다.¹³³⁾ 이 때

127) I. 벌린, 『이샤야 벌린의 자유론』, 박동천 옮김, 아카넷 2019, 414.

128) J. 버틀러, 「우리, 인민 - 집회의 자유에 관한 생각들」, 알랭 바디우 외, 서용순, 임옥희, 주형일 옮김, 『인민이란 무엇인가』, 현실문화 2016, 67-69.

129) J. 로크, 『통치론』,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및 그 목적에 관한 시론, 203.

130) J. 로크, 『통치론』,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및 그 목적에 관한 시론, 207

131) J. 버틀러, 「우리, 인민 - 집회의 자유에 관한 생각들」, 75.

132) J. 버틀러, 「우리, 인민 - 집회의 자유에 관한 생각들」, 70.

133) 미셸 푸코, 오토르망 옮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난장 2014, 400-401,

문에 주권자의 통치보다 “민주주의적인 질서 내부에서의 ‘무정부주의’ 에너지 혹은 영구 혁명의 원칙”¹³⁴⁾을 지닌 “초과-의회권력”으로서 인민주권의 정치수행이 인민주권 시대의 민주주의 원리에 합당할 것이다. 인민의 자기 지시, 자기표현의 공간, 인민의 자유로운 인격 활동의 장소에서 국가는 폐지되고, 무정부상태만 남는다. 인민의 “자발적 협약, 완전히 자유로운 조합과 조합연방”¹³⁵⁾ 공동체, 중앙집권적 권력이 해체된 자리에 등장하는 지방분권 권력으로서 ‘폴리스’가 국가 지양 이후 무정부적 자유주의의 공동체이다. 홀덜린이 ‘몰락하는 조국’ 이후 그린 크레온 독재 권력의 해체와 함께 탄생하는 공화주의적 ‘폴리스’, “폴로스(πόλος),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그곳에서 그리고 그 주변을 도는 극, 소용돌이”처럼¹³⁶⁾ 대화 속의 공통언어를 스스로 찾아가는 자유인들의 ‘폴리스’가 자유주의적 인민주권의 완전한 실현 공동체이다. 이런 공동체는 근본적으로 - 다산의 여전제(閭田制) 공동체처럼 - 가입과 탈퇴, 거주이전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된 마을 공동체일 것이다.

430~431.

134) 같은 논문, 69.

135) 표트르 크로포트킨, 백용식 옮김, 『아나키즘』, 충북: 충북대출판부 2011. 40.

136) Friedrich Hölderlin, “Anmerkungen zum Ödipus”, in: *Sämtliche Werke, Briefe und Dokumente, Bd. 10*, hrsg. v. D. E. Sattler, München: Luchterhand 2004, S. 218~219. 그리고 Martin Heidegger, *Hölderlins Hymne >>Der Ister<<*, in: *Gesamtausgabe II. Abteilung: Vorlesungen 1923-1944*, hrsg. v. Walter Biemel, Bd. 53, Frankfurt a. M. 1984, S. 100

참고문헌

성경, 읍기

『논어』

『맹자』

『서경』

『예기』

『순자』

한비자, 김원중 역, 『한비자』, 휴머니스트 2016.

『한국민주주의 각급학교교육지침』, 문교부, 1972.

강정인, 「박정희 대통령의 민주주의 담론 분석: “행정적” · “민족적” · “한국적”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철학논집』 제27집, 서강대철학연구소 2011.

김성실, 「한국적 민주주의의 사상적 토대와 특성, 전망에 관한 일고찰. 유교 정치사상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제36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7.

김세균, 「한국적 민주주의」, 『역사비평』 제47집, 역사비평사 1999.

김윤희, 「근대 국가구성원으로서의 인민 개념형성(1876-1894)-민(民)=적자(赤子)와 『서유견문(西遊見聞)』의 인민-」, 『역사문제연구』 제13집, 역사문제연구소 2009.

김용호, 「박정희의 민주주의관」, 『한국논단』, 한국논단 1991.

박종홍, 「통일과 민족사적 정통성」, 『윤리연구』 제1집, 한국국민윤리학회 1973.

이노우에 아쓰시, 「이퇴계와 유교적 민본주의」, 『퇴계학논집』 제8집, 영남퇴계학연구원 2011.

이희주, 「유교의 정치사회에 있어서 통치자의 자질」,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제6집,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7.

이상록, 「‘예외상태 상례화’ 로서의 유신헌법과 한국적 민주주의 담론」, 『역사문제연구』 제20집, 역사문제연구소 2016.

이승환, 「‘아시아적 가치’ 논쟁과 유교문화의 미래」, 『퇴계학』 제11집, 퇴계학연구소 2000.

- 이승환, 「반유교적 자본주의에서 유교적 자본주의로」,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 동아시아문화포럼 1999.
- 이아영, 송재혁, 「성왕(聖王)과 패자(霸者) 사이: 월왕 구천(句踐)에 대한 『국어』와 『사기』의 평가」, 『한국정치학회보』 제53집, 한국정치학회 2019.
- 유순달, 「한국적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한국논단』 제146집, 한국논단 2001.
- 윤민재, 「칼 슈미트의 정신학과 세속화, 그리고 그 비판: 정치신학 비판을 통한 민주주의 위기 분석」, 『사회과학연구』 제57집, 강원대사회과학연구원 2018.
- 윤재왕, 「예외상태와 주권의 역설 - 아감벤의 칼 슈미트 해석에 대한 비판」, 『강원법학』 제47권, 강원대비교법학연구소 2016.
- 장관식, 「박정희·전두환·노태우의 리더십 분석」, 『정치논총』 제27집, 건국대학교 1992.
- 장현근, 「도덕군주론 : 고대 유가의 聖王論」, 『한국정치학회보』 제38집, 한국정치학회 2004.
- 장현근, 「성인의 재탄생과 성왕 대 폭군 구조의 형성」, 『정치사상연구』 제17집, 한국정치사상학회 2011.
- 전인권, 「박정희의 민주주의관: 연설문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11집, 서울대한국정치연구소 2002.
- 정운재,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리더십에 대한 유교적 이해」, 『유교리더십과 한국정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엮음, 백산서당 2002.
- 정운재, 「제 3.4공화국의 성격과 리더십 - 박정희대통령의 근대화리더십에 관한 연구-」, 『동북아연구』 제1집, 경남대국동문제연구소 1995.
- 최광승, 조원빈, 「박정희의 민주주의관과 유신체제 정당화」, 『한국동북아논총』 제26집, 한국동북아학회 2021.
- 한기식, 「한국민주주의론 서설 - 토착적 민주주의·개념·형성을 위한 하나의 시론 -」, 『한국정치학보』, 한국정치학회 1971.
- 한상원, 「예외상태의 정치적 존재론: 슈미트와 벤야민의 예외상태론 논쟁 고찰」, 『시대와 철학』 제27집,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6.
- 한승연, 「조선후기 國民再造와 民개념의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한국정치학회 2012.
- 함규진, 「한국적 민주주의의 형성과 민본주의의 역할」, 『정치정보연구』 제19

- 집, 한국정치정보학회 2016.
- 주디스 버틀러, 「우리, 인민 - 집회의 자유에 관한 생각들」, 알랭 바디우 외, 서용순, 임옥희, 주형일 옮김, 『인민이란 무엇인가』, 현실문화 2016.
- 갈봉근, 『유신헌법해설』, 한국헌법학회출판부 1975.
- 김운태 외, 『한국민주주의 - 그 발전과 토착화 -』, 동서출판사 1973.
- 김상준, 『맹자의 땀 성왕의 피. 중층근대와 동아시아 유교문명』, 경기도: 아카넷 2016.
- 박정희, 『우리民族의 나갈길 - 社會再建의 理念-』, 동아출판사 1962.
- 박종홍, 「자유 의의」, 『박종홍 전집』 III, 형설 1980.
- 박종홍, 「지도자론」, 『박종홍 전집』 VI, 형설 1980.
- 박종홍, 「새 역사의 창조 - 유신시대의 기초철학-」, 『박종홍 전집』 III, 형설 1980.
- 송호근, 『인민의 탄생. 공론장의 구조 변동』, 민음사 2015.
- 이상익, 『유가사회철학연구』, 심산 2002.
- 이선근, 『한민족의 국난극복사』, 미문 1978.
- 정윤재, 『정치리더십과 한국민주주의』, 나남 2003.
- 최익한, 송찬섭 엮음, 『실학과와 정다산』, 경기도: 서해문집 2011.
- 한태연, 『국가재건 비상조치법』, 법문사 1961.
- 로크(J.), 『통치론.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및 그 목적에 관한 시론』, 강정인, 문지영 옮김, 까치 2018.
- 루소(J. J.), 『사회계약론』, 이환 옮김,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 마키아벨리(N.), 『군주론』, 강정인·김경희 옮김, 까치 2012.
- 별린(I.), 『이사야 별린의 자유론』, 박동천 옮김, 아카넷 2019.
- 부르디외(P.), 『언어와 상징권력』, 김현경 옮김, 나남 2020.
- 스피노자(B. d.), 『신학-정치론』, 강영계 역, 서광사 2017.
- 슈미트(C.), 『정치 신학. 주권론에 관한 네 개의 장』, 김항 옮김, 그린비 2010.
- _____, 『험릿이나 헤쿠마냐. 극 속으로 침투한 시대』, 김민혜 옮김, 문학동네 2021.
- _____, 『독재론. 근대 주권사상의 기원에서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까지』, 김효전 옮김, 법원사 1996.

- _____, 『정치적인 것의 개념』, 김효전·정태호 옮김, 살림 2016.
- 아렌트(H.), 『혁명론』, 홍원표 옮김, 한길사 2004.
- _____,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 김선욱 옮김, 한길사 2013.
- 아감벤(J.), 『예외상태』, 김항 옮김, 새물결 2019.
- _____, 『내전. 스타시스, 정치의 패러다임』, 조형준 옮김, 새물결 2017.
- _____, 『왕국과 영광. 오이코노미아와 통치의 신학적 계보학을 향하여』, 박진우·정문영 옮김, 새물결 2017.
- 푸코(M.), 『안전, 영토, 인구』, 심세광 옮김, 난장 2011.
- _____,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오토르망 옮김, 난장 2014.
- 크로포트킨(P.), 『아나키즘』, 백용식 옮김, 충북대출판부 2011.
- Bodin, J., *Über den Staat*, Stuttgart: Reclam 1976.
- Benjamin, W., “Zur Kritik der Gewalt”, in: *Walter Benjamin Gesammelte Schriften Bd. II.1*, hrsg. v. Rolf Tiedemann u. Hermann Schweppenhäuser, Frankfurt a. M.: Suhrkamp 1991.
- _____, “Über den Begriff der Geschichte”, in: *Walter Benjamin Abhandlungen*
- Schriften, G., *Bd. I-2*, Frankfurt a. M.: Suhrkamp 1991.
- Flickinger, H.-G., *Die Autonomie des Politischen. Carl Schmitts Kampf um einen beschädigten Begriff*, hrsg. v. Ders., Winheim: Acta Humaniora 1990.
- Heidegger, M., Hölderlins Hymne >>Der Ister<<, in: *Gesamtausgabe II. Abteilung: Vorlesungen 1923-1944*, hrsg. v. Walter Biemel, Bd. 53, Frankfurt a. M. 1984.
- Hölderlin, F., “Anmerkungen zum Ödipus”, in: *Sämtliche Werke, Briefe und Dokumente, Bd. 10*, hrsg. v. D. E. Sattler, München: Luchterhand 2004.
- Mehring, R., *Carl Schmitt. zur Einführung*, Hamburg: Junius 2000.
- Schmitt, C., “Der Führer schützt das Recht (1934)”, in: *Positionen und Begriffe im Kampf mit Weimar-Genf-Versailles 1923-1939*, Hamburg: Hanseatische Verlagsanstalt 1940.

>>Zusammenfassung<<

Der gegenwärtige Mißbrauch der konfuzianischen Konzeption vom guten Königs und die souveräne Macht

Kyeong Bae LEE
(Univ. Jeonju)

Um die Gewalttätigkeit und die Gefahr der vorhandenen Souveränität zu demaskieren und die ideologische Maske der gemachten Macht zu entreißen, werde ich unter der These ‘Die souveräne Macht ist die Gewalt’ in “II. Phantasie des guten Königs: die gemachte Macht” auf den unauflösbaren Widerspruch von dem konfuzianischen Ideal und dem Wirklichen aufmerksam machen, in “III. Realisierung des ideologischen Scheins: Ein guter König(?) Park Jeong Hee” folgende Frage stellen, Mit welcher theoretischen Maske entsteht die Staatsgewalt, die wir schon erfahren hatten und Wie sie, den eigenen Standpunkt wechselnd, um uns herumwandert ist. In “IV. “Quare silites juristae in munere vestro?” : eine gefährliche Macht” werde ich in Bezug auf die Kritik an der modernen Staatsverfassung die Souveränitätstheorie von Carl Schmitt und Giorgio Agamben behandeln, weil Carl Schmitt Hitler den Vertreter der Verfassung als die Letzteinstanz benannt hat, die südkoreanischen Rechtswissenschaftler die Jusin-Verfassung Rechtsfertigung gemacht und den ‘Ausnahmestand’ abgesehen haben, der nach 9·11 mit der Proklamierung von George Bush eingerichtet ist. Um das Zufluchtsort des machtlos

seienden Volks zu suchen, werde ich schließlich statt die Schlußfolgerung einen Grundriß vom “Fragment über die anarchische Freiheit” darstellen. Solange der Staat vorhanden ist und nach der Revolution noch erhält wird, wird er notwendig als das Instrument der souveränen Macht eigene Rolle spielen. In diesem Grund stellt die Idee der anarchischen Freiheit sich unmittelbar den absoluten Ruhestand aller Gewalt vor.

Schlagwörter: Ein guter König, Park Jeong Hee, die souveräne Macht, Ausnahmezustand, anarchische Freiheit

	심사완료일	
논문접수일: 2023.01.08.	1차 심사: 2023.01.11. 2차 심사: 2023.01.12. 3차 심사: 2023.01.14.	게재 확정일: 2023.01.16.